

##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. 7. 12.

예천군의회 의장



### 1. 제정이유

○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과 그 발생의 관리를 위해 계획수립,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, 정보제공,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, 협력체계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건강의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6조)
- 나. 대기측정망 설치 등(안 제7조)
- 다.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(안 제8조)
- 라. 정보제공(안 제9조)
- 마.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(안 제10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)

### 3. 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『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』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다. 예산현황 : 해당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결과 :
- 바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7월 19일**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| 제 정(안) | 수 정(안) | 수 정 사 유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       |        |         |
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- 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 650- 6407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syyh2000@korea.kr

##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미세먼지”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.
  - 가.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( $\mu\text{m}$ ) 이하인 먼지(PM-10 : 미세먼지)
  - 나. 입자의 지름이 2.5마이크로미터( $\mu\text{m}$ ) 이하인 먼지(PM-2.5 : 초미세먼지)
2. “미세먼지 배출원”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·기계·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비산먼지”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.

4. “환경취약계층”이란 영유아, 어린이, 노인, 임산부, 호흡기 질환자,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①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,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(이하 “미세먼지등”이라 한다)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·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사업자의 책무)**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주민의 권리와 책무)** ① 주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세먼지등의

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
2. 미세먼지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
4.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항
5. 사업장·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
6. 미세먼지등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대기측정망 설치 등)**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,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)**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·아동관련 시설,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

2.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한 홍보, 교육, 캠페인 등의 사업
3.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9조(정보제공)** 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.

**제10조(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)** ① 군수는 대기오염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,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 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대기오염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11조(협력체계 구축)** 군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